

■ CJ 온스타일 방송상품 공정거래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_20231228

현행	개정안
제11조 [판매수수료 운영 원칙] 1~4. (생략) 5. <신설> 6. (생략) 별지2. [판매수수료 운영지침] 제1조 [운영지침] ①~⑤ (생략) ⑥ <신설> ⑦ <신설> ⑧ <신설> 별지6. [판매촉진비용의 기준 및 운용] 제2조 [판매촉진행사 유형] ① (생략) ② <신설> 제3조 [판매촉진행사 운영 협의 절차] <신설> ① <신설> ② <신설>	제11조 [판매수수료 운영 원칙] 1~4. (생략) <u>5. 상품거래량 및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</u> 6. (생략) 별지2. [판매수수료 운영지침] 제1조 [운영지침] ①~⑤ (생략) <u>⑥ 'CJ'와 '협력사'는 최초 판매수수료 결정 시, 본 규정 제11조 각 호를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.</u> <u>⑦ 'CJ'와 '협력사'는 최초 판매수수료 결정 후 변경시에도 본 규정 제11조 각 호를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.</u> <u>⑧ '협력사'는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, 'CJ'에 변경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판매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별지6. [판매촉진비용의 기준 및 운용] 제2조 [판매촉진행사 유형] ① (생략) <u>② 운영이 금지되는 판매촉진행사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<u>1. 유형을 불문하고 '협력사'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사전 약정하지 않은 판매촉진행사</u> <u>2. 법률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품의 판매촉진행사</u> 제3조 [판매촉진행사 운영 협의 절차] <신설> <u>① 'CJ' 또는 '협력사'가 상대방에 판매촉진행사의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, 양 당사자는 판매촉진행사의 운영에 대하여 협의 후 서면으로 사전 약정한다.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부담비율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.</u> <u>② 'CJ'가 자신의 판매촉진행사를 전체 '협력사'에 사전 공지하고 '협력사'가 해당 판매촉진행사에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사로 참여할 수 있다. 단, 'CJ'는 '협력</u>

